

사교육 분야 및 표시·광고관련 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공회의소 중회의실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원·학습지관련 업체 등 사교육 분야 및 광고주·광고대행업체 등 표시·광고관련 206개 업체, 272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 김형배 사무관, 제도개선과 지철호 과장, 표시광고과 정정길 서기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기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도,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사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에서 국제업무1과 김 사무관은 공정거래제도의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중 한국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유형을 보면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입찰담합, 덤핑, 거래선의 제한 등의 순으로 문제가 많은 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되어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사전방지대책으로서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을 강조하였는데, 지난 7월 5일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최종안을 업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한 바 있고,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 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및 기업 내부 감독체계 구축, ③ 업무성격에 맞는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및 공정거래교육 실시 등 핵심요소를 반영한 자율준수규범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발견시 제재 수준을 대폭 경감하고, 우수기업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과 지 과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기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는 행위의 실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의만 있으면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시·광고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에서는 표시광고과 정 서기관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할인 판매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인하시점과 인하폭에 대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로써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에서는 사업자가 비교광고를 제작할 때 사업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더라도 소비자오인성이 없다면 이를 부당한 비교광고로서 금지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으며 비교광고의 악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 심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법률 상담

- ☐** A학원은 대입종합반학원으로서 주위의 대입 재수생들을 당 학원에 등록시킨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을 장학금 명목으로 회원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인 우량회원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광고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 ☑**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금씩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단계판매방식과 유사한 A학원의 영업전략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 ☐** 당 연합회는 학원관련 사업자단체로서 교육부로부터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학원수강료 가이드라인이나 수강료조직원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각 회원들에게 이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 ☑** 물가안정대책 가이드라인이나 수강료조직원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일 뿐 그대로 따르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등 행정관청이 내리는 협조 또는 권장사항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위반이 된다.
- ☐** 출판업을 하는 A회사의 임원 겸이 경쟁사인 B회사로 옮긴 후 A회사의 직원을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스카웃해가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여지는 없는지?
- ☑**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도 포함된다(공정거래법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참조). 하지만 이 사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여부는 사업활동방해행위 자체가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사용했느냐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어느 정

도 그 방해되는 행위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상정되고, 핵심기술자를 집단적 혹은 계속적으로 유인·채용하는 경우처럼 방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부당하고 심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문 A리는 대형 자동차학원에서 수강료를 할인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다른 자동차학원들도 A학원의 수준으로 수강료를 할인하다보니 고사(枯死)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A학원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답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저렴한 수강료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격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경쟁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가격 할인의 정도가 지나쳐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한 것이라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당염매)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사업자가 그 정도의 과징금을 감수하고 위법행위를 한다면 과징금 이외의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인지?

답 과징금이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이다. 경쟁제한성이 큰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손해배상액만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다.

문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제품을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LPG 충전소는 고시적용사업자가 안 되는 것인지?

답 동 고시가 도입될 당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LPG가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하더라도 모법인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